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집행부 제출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6. 2.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6. 2. 3.

기획행정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예산과장)
- 제출일자: 2026. 1. 21.(수)
- 회부일자: 2026. 1. 22.(목)
- 검토기간: 2026. 1. 22.(금) ~ 1. 26.(월)

2. 개정이유

- 의회사무국 인사시스템 체계화와 업무역량 향상, 직원 및 구의원의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교육 인력 보강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총 계: 1,313명 → 1,314명(+1)
 - 집행기관: 1,275명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: 38명 → 39명(+1)
-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
 - 총 계: 1,313명 → 1,314명(+1)
 - 일반직 계: 1,310명 → 1,311명(+1)
 - 6급이하 소계: 1,233명 → 1,234명(+1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,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입법예고(2025. 12. 22. ~ 2026. 1. 12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인사교육팀이 신설됨에 따라,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규정 제24조 및 제29조에 정원의 관리와 직급별 정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2026년도 우리 구 인건비 예정액은 약 1,353억원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 1,350억원 보다 3억원 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, 의회사무국의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고 의회의 전문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원 및 직원 교육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, 이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~ 3. 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“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~ ⑤ (생략)